

민 주 공 화 당

기조민제 485 호

1966. 10. 21

경우 원무임소 장관

수신 서울시장

제목 철거민 월동대책에 대한 탄원

별첨 탄원서를 거부에 이첩하오니 철거민의 ~~도약한 실정을 감안하여~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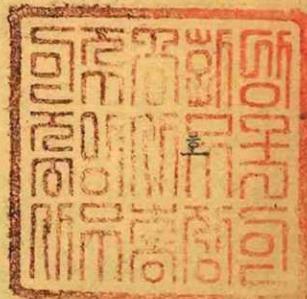
선처하여 주시고 결과를 회보 바랍니다.

유첨 : 탄원서 1부. 끝



길

재





판원서

제기三동천자대상자일동

한 원 서

복지 국가 건설에 주야분투 노력하시는 共和黨議長 님께 만감의
경의 표 하나이다.

귀승 드리니 당국에서는 동대문구 제기 3동 136번지 (고려대학교 전면
도로)로 부터 용파 국민학교 측면간에 인접하는 도토를 신설로서 서두르니
서쪽 보상대상자 등의 불이익에 당하는 일이라 그 시기와 대지 및 건물 보상
에 대하여 자대한 관심과 우려를 글치 듯하여 다음 사항을 탄원 하나이다.

1. 중설에 피하면 당국에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신설도로 기타 공
사가 실한 재정난에 당면해 있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
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원등질
이 닥치는바 저희들도 또한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가옥을 철거 당
할때 생활대책이 마련하오니 비록 급을 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통질이 지
나고 완전 보상 대책이 수립 될때까지 해공사를 연기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
옵니다.

2. 최근 모 당부자의 말에 의하면 가옥 철거시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
지급하고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명년도에 지급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
면 서울시민 전체가 지칠하다 시피 저의 철거 대상자들은 고려대학교 학생
들을 상대로 한 학숙을 혐으로 하거나 전세방을 높아서 간신히 생계를 영위
하는 영세민들이라 그렇게 되면 좋지에 생업이 끈길뿐 아니라 겨우 얼마되
지 않은 건물보상금 받아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옥주는 당장 방한간
도 마련하지 못할 실정이니 대지 보상금이 지급 될때까지 어떻게 살라는
것입니다?